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방안

임준 연구위원

보험산업 내부에 집적된 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외부에 집적된 정보도 함께 사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으나 현재는 외부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존에는 주로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보험사기에 국한하여 정보공유 이슈에 접근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다른 분야와의 정보공유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됨. 영국의 Serious Crime Act 2007 사례를 참고해서 좀 더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은 개별 보험회사 차원의 보험사기 적발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정보(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집적하여 보험사기방지에 활용하고 있음
 - 현재는 규제당국인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보험산업 전체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보험금 지급정보)가 집적되어 있음
- 보험산업 내부에 집적된 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외부에 집적된 정보도 함께 사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으나 현재는 제한적인 상황임
 - 보험산업 외부의 집적정보 예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료 관련 정보, 그리고 검·경의 범죄자 관련 정보 등이 해당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5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료에 한정되어 있음
 - 이는 아마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험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정보인 보험료만 포함되고, 보험사기적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편, 보험사기방지 목적에서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에는 보험산업 내부기관과 외부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내용 가운데 보험산업 외부의 공공정보활용과 관련된 조항은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제7조 정도가 전부임
 - 보험사기방지 관련 비영리기관이 보험사기 인지단계에서 보험산업 외부의 집적정보를 비식별 처리해서 보험사기방지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은 없음
-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조항이 담겨져 있는 Serious Crime Act 2007(이하 'SCA')을 제정하여 범죄행위에 대응하고 있음
 - 정보공유 관련 조항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은 특정 사기방지기관(Specified Anti-Fraud Organization, 이하 'SAFO')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SAFO에는 보험사기방지 비영리기관인 Insurance Fraud Bureau, Insurance Fraud Investigators Group 등도 포함되어 있음¹⁾
 - SCA의 정보공유 조항이 타당성을 가지는 논거 가운데 하나는 범죄 간 연관성임
 - 최근 한 연구에²⁾ 의하면, 보험사기범의 상당수가 다른 범죄에도 연루되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69%는 보험사기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일종의 관문(gateway) 역할을 하였음
-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 성과를 거두었음
 -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공공 데이터의 공개를 명령하였고, 그 결과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 청구 관련 데이터(Medicare billing data)임

1) National Fraud Authority(2010), "Report on Data Sharing for the Prevention of Fraud under Section 68 of the Serious Crime Act 2007"

2) Hill Dickinson and Cifas(2015), "Fraud Report 2015". Cifas는 보험, 은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민간 조직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기방지 기관이고, Hill Dickson은 보험사기에 특화된 법률회사인데, 두 기관은 Cifas의 National Fraud DB와 Hill Dickson의 보험사기 DB를 결합해서 보험사기와 다른 범죄 간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음

- 법무부(DOJ), 연방수사국(FBI), 보건복지부(HHS)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팀을 조직해서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보험사기를 적발하였음
 - 5년 동안 약 192억 달러를 환수하였는데, 투입 대비 효과를 계산해보면 투입비용 1달러당 환수액은 약 8달러로 나타남
- 해외사례를 통해 볼 때, 국내 보험사기방지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첫째, 이제까지 주로 보험산업의 관점에서 보험사기에 국한해 정보공유 이슈를 접근하였는데, 영국사례에서처럼 좀 더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포괄적 접근법을 취할 때, 정보공유의 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범죄 간 연관성임
 - 둘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인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민간의 비영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보험사기 분석조직을 현행보다 좀 더 공익성이 강한 기관에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kiri](#)